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11호(號) 1934(昭和 9)년 9월 20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4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4(昭和 9)년 9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명란젓[明太子]
- 2 발 역(發 驛) 갈마(葛麻), 원산(元山), 흥남(興南), 서호진(西湖津), 퇴조(退潮), 삼호(三湖), 전진(前津), 영무(靈武), 신포(新浦), 양화(陽化), 신창(新昌), 용대(龍台), 차호(遮潮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
- 4 급종별(扱種別) 소화물급[小口扱], 톤급(噸扱: 특별톤급[特別噸扱]을 제[除]함), 차급(車扱)
- 5 임 률(賃 率) 보통임률(普通賃率)의 1할(割) 5푼(分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4(昭和 9)년 9월 20일부터
1935(昭和 10)년 3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보통임률(普通賃率)에 의(依)해 특정구간(特定區間) 통계(通計) 천3백톤(千三百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자(者)에 대(對)해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률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
나 특별톤수(特別噸數)에 의(依)해 출화(出貨)한 수량(數量)은 전호(前號)의 수량(數量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을 득(得)함.
다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3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.